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질의 답변내용

연번	지침 (페이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면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목별 세부시설 면적은 제공된 토지조서를 확정면적으로 하여 작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역내 토지조서를 사업 제안자가 별도로 대장면적을 확인하여 재 작성한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토지조서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안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시 사업대상지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여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사업대상지 및 사업 조건)과 관련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 특례사업 사업대상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510,769㎡로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비공원시설 구역계 내의 국·공유지 매입 토지 매입(34페이지)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대상 면적을 변경 하여도 되는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역과 기 조성되거나 계획된(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이외 국·공유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될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매입(보상비 포함) 계획으로 수립 ○ 단, 실질적인 매각여부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국·공유지 관리부서(기관) 협의 결과에 따름 ○ 비공원시설내에 국·공유지 매입시 사업대상면적에 포함 가능하나 비공원시설 면적은 제안공고시 제시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공유지 공원시설 조성시 사업대상면적 반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작성시 국·공유지내 기 조성된 공원시설물 등을 포함 하여 공원시설을 이내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성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과 관련 공원면적(764,863㎡)과 사업대상면적(510,769㎡)이 상이한 바 사업대상면적은 공원면적 전체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면적은 510,769㎡로 공원전체 면적 764,863㎡중 국·공유지 면적 254,094㎡를 제외한 면적임.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4	8	○ 제5조(사업대상지 및 사업조건)과 관련 민간특례사업 대상면적이 국·공유지를 제외하여 공고되어 있는바 비공원시설내 국·공유지 포함시 매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35페이지) 사업대상면적은 매입필지를 포함하여 변경되는 것인지?	○ “2번” 답변내용 참조
5	8	○ 지침 제6조제2항의 유지관리비용은 72페이지 <서식 28> 공원시설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지관리비용은 본 사업의 총비용(공원시설 사업비)에 미반영
6	8	○ 지침 제5조제2항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방법은?	○ 하자보증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산정
7	8	○ 공원시설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 “6번” 답변내용 참조
8	8	○ 제5조제3항과 관련 비공원시설부지에대한 용도, 밀도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축소되었을 경우 당초 제출되었던 공원 조성 사업비 및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조정이 가능한지?	○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개별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할 계획임. ○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결과 등으로 사업시행의 조건의 변경될 경우 변경조건을 수용하고 그 계획을 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 따라 제안내용에 대해 변경 가능함. ○ 단,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조정은 불가함.
9	8	○ 제5조제1항 우선협상대상자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관련 기관 협의 결과사항으로 용적율, 건폐율 등의 축소에 의해 우선협상자가 제안서에 제시된 공원조성 사업비를 축소가 가능한지?	○ “8번” 답변내용 참조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함.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3항 사업시행방식에 대하여 용도, 밀도에 대한 규정은 제안자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하여 제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근거로 작성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제7조(제안자 자격조건 및 응모신청 방법)제7항 및 제10항에 의거 아래 지배구조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에 해당 되는지 질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법인 홍길동의 주식보유 39% - B법인 홍길동의 주식보유 15% - B법인 이몽룡의 주식보유 33% - 홍길동은 A, B회사의 회장 - 홍길동과 이몽룡은 처남매부 관계 ○ 위의 관계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라면 공동출자가 가능하며, 대표 1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 A, B 회사가 공동출자(대표 1명 지정) 대표사로 사업제안 할 경우 참여 전문 인력보유, 전문성 및 경력, 사업실적 등 통합제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해당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참조 ○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대표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계량평가 항목은 대표제안자만 평가함.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제7조제1항제1호에 제안자 자격조건과 관련 사업제안서 제출전, 여러 명의 토지주가 연합체(조합 등)를 결성하여 개발 신탁방식 등을 전제로 신탁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상기 제안자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개개인의 토지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5개사(인)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단, 신탁사의 참여가능여부, 평가 및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사업이행 가능여부 등은 제안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할 사항임.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개발신탁 등을 전제로 신탁방식 개발필요)</p> <p>○ 토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신탁사가 대표사 이외에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안자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spc를 설립하여 토지소유권을 spc로 이전해야 하므로 대표사만이 토지를 소유할 필요 없음, 개발신탁인 경우 spc 토지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해야 하므로 토지소유한 신탁사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도 충분)</p> <p>○ 타지자체(안양시) 공모사례의 경우, 상기 토지소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자를 최우선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본 공모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공모지침서 배점기준과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 최우선 선정 또는 별도의 가산점(총 득점의 10%) 제도필요 이 경우 공고시점 토지소유가 아니라 제안서 제출시점 토지소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신탁포함)로 인정되어야 함)</p>	<p>○ 제안자의 자격요건은 지침 제7조 제안자 자격조건 등 참고</p> <p>○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가산점은 부여할 수 없음.</p>												
13	10	<p>○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에 대하여 1개법인이 다음과 같이 공원별 참가 제안이 가능한지</p> <table border="1" data-bbox="571 1145 1292 1337"> <thead> <tr> <th>구분</th> <th>오등봉공원</th> <th>중부공원</th> </tr> </thead> <tbody> <tr> <td>case1</td> <td>컨소시엄 대표사</td> <td>컨소시엄 대표사</td> </tr> <tr> <td>case2</td> <td>컨소시엄 대표사</td> <td>컨소시엄 구성원</td> </tr> <tr> <td>case3</td> <td>컨소시엄 구성원</td> <td>컨소시엄 구성원</td> </tr> </tbody> </table>	구분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case1	컨소시엄 대표사	컨소시엄 대표사	case2	컨소시엄 대표사	컨소시엄 구성원	case3	컨소시엄 구성원	컨소시엄 구성원	○ 참여 가능
구분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case1	컨소시엄 대표사	컨소시엄 대표사													
case2	컨소시엄 대표사	컨소시엄 구성원													
case3	컨소시엄 구성원	컨소시엄 구성원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4	11	○ 제8조(제출서류)와 관련 PPT 자료에 대해 분량제한 및 사이즈 (A3 or A4), 표지 및 제본방법과 관련하여 기준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제안서에 대한 발표가 10분 이내이므로 적정분량으로 작성하고 규격은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규격(A4)으로 작성(분량, 제본방법은 제한 없음) ○ 참고로, 공용컴퓨터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므로 글꼴, 특수문자, 동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쉬, 소리추가시 구현이 어려울 수 있음.
15	11	○ 제8조(제출서류)와 관련 문서자료 제출 외에 별도로 파일이나 도면 자료를 전자파일(USB)로 제출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제출시 프로그램 버전도 문의 요청)	○ 제안서 제출은 유인물로 작성 제출하고 별도의 전자파일은 제출받지 않음
16	11	○ 지침 제8조(제출서류) 표 안에 부속서류의 범위, 사업능력평가 서류의 범위? ○ 부속서류가 혹시 서식 3~15가 맞다면 45페이지 서식1 <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12) 제안지침에 따른 부속서류와 첨부서류 목록 4) 대표자선임서 5) 인감신고서 6)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을 계획서, 7) 이행각서, 8) 투자확약서, 9) 청렴계약서약서 10)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가 서로 중복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제4조 규정 참조 ○ 신청서에는 원본, 신청서류와 부속 서류간 중복시 부속서류에 사본첨부
17	11	○ 제8조 PPT자료는 형식 및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용지 크기 및 방향, 표지서식, 애니메이션 사용가능 여부 등에 관한 작성지침 제공계획 있는지? ○ 제8조 관련 수록 도면에 대한 표현방식(예시 CAD외 표현불가 등) 및 익명성 제고를 위한 공통된 도면양식(도곽, 스케일, 방위 등) 제공계획 있는지?	○ 공통된 도면양식 제공계획은 없으며, PPT 자료작성은 "14번" 답변내용 참조 ○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표기는 불가하므로 보편적인 표현방식으로 작성 제출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제출서류 제1항과 관련 PPT자료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평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데 PPT자료 작성시 분량제한(페이지 등) 여부 및 애니메이션 효과 사용여부? ○ PPT 표지 서식은 제공되지 않는지, 또한 용지크기, 용지방향, 용지재질, 인쇄방법, 제본방법 등 세부작성 지침 요청에 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번”, “17번” 답변내용 참조
1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 제출서류중 제안서 형식(hwp, ppt, pdf) 제한여부 ○ 제8조제2항 제안서 수록 도면중 제2호 공원시설배치계획, 식재 계획에 세부내용포함 여부(ex. 세부수량이 포함된 실시설계도면 수준/제안서(구상) 단계 설명자료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는 서면제출이므로 형식제한 없음 ○ 제안서 수록 도면은 제안서(구상단계) 설명자료 수준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의 감리비용은 상주감리로 산정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의 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
2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비용부담 등 유의사항)과 관련 감정 평가한 토지보상액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확약서의 제출시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인가 이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액과의 차액 발생시 즉시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2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비용부담 등 유의사항) 제6항과 관련 감정평가한 토지 보상액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확약서의 제출 시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번” 답변내용 참조
2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평가과정)과 관련 ppt 자료 설명시 대표사 또는 컨소시엄 구성사, 제안서 작성 참여업체 등 발표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는지? ○ 제15조제2항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시 블라인드 방식 ppt 보고서 10분을 초과하여 발표할 경우 감점사항인지? (초과시 소리로 알려주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자료 발표는 대표제안사의 임직원으로서 대표제안자가 위임한 자(위임장은 발표일 이전까지 제출) ○ 발표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 당일 현장에서 공지할 계획임.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24	15	○ (평가과정)중 ppt 설명자료 발표시 발표자 제한여부(대표자/컨소시엄 구성자 등)	○ “23번” 답변내용 참조
25	15	○ 제15조 관련 제안 평가 시 10분 이내 PPT자료를 제안 설명하게 되어 있는바, 발표자에 대한 자격 및 증빙서류 제출 규정은?	○ “23번” 답변내용 참조
26	15	○ 제15조제2항 PPT 발표자는 대표자 임직원인지, 컨소시엄 임직원인지 ○ 발표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야하는지?	○ “23번” 답변내용 참조
27	15	○ 제15조(평가과정)제2항과 관련 블라인드 방식의 설명은 어떤 방식인지 예) 발표자의 위치 및 공간배치, 발표자와 심사위원 질의시 참여 가능 인원수 등	○ 블라인드 방식은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제안서 발표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공간배치 계획임. ○ 심사위원 질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운영 세부기준 등이 마련되면 발표일정과 참여가능 인원 수 확정 후 통보
28	15 24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1~2월 중)과 동일한 일정인지? ○ 제안심사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이 별도라면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일정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 지침 제14조 규정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2020.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시까지 운영
29	15	○ 제15조(평가과정)제2항 PPT발표 관련해서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에 공지 되는지 질의합니다.	○ “27번” 답변내용 참조
30	15	○ 제15조(평가과정)과 관련 제안서 작성 및 도판제작기준 외 제안 설명자료(PPT) 분량(페이지), 제본방법, 색상사용 등 기준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17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31	16	<p>○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단독일 경우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점수의 5% 범위에서 우대하고 있는데, 금번 사업에도 제안자가 단독일 경우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 시 단독제안자에게 우대점수가 부여되는지 질의합니다.</p>	<p>○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고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음.</p>
32	17 23	<p>○ 제17조제7항에서 사업대상 부지매입비(지장물 포함)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어있으며, 제26조제1항 제2호에서 당초 예치금과 실제 보상액과의 차액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p> <p>- 예치금이 보상액보다 클 경우 반환되는지?</p>	<p>○ 예치금이 실제 부지매입(지장물 포함) 보상액보다 클 경우 사업대상 부지매입비의 5분의 4를 초과하는 차액만큼 반환</p>
33	2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24조(손해보상)</p> <p>①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시 사업협약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남은 지상구조물 등은 발주청에 무상 귀속된다</p> <p>②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시 발주청에서는 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p> <p>③민간공원추진자는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p> </div> <p>○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제17조제7항에 따라 예치한 부지매입비 등의 기 투입된 자금의 반환여부에 대하여 질의함</p>	<p>○ 지침 제17조제7항에 따라 우선협상자가 사업대상 부지매입비(지장물 포함)로 예치된 금액 중 미 집행 예치금에 대해서는 반환 가능하며, 이외 공원 및 비공원시설 투자비, 매입된 부지는 반환불가</p>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3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하도록 되었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 3인은 시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토지주가 선정한 1인,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1인으로 토지보상액을 평가하는 방안이 맞지 않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제25조 제1항 참조
3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안서 공모일 기준의 익일로부터 접수기간까지 제안서 준비기간이 60일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는 제안공고 후 90일이 일반적입니다. 수준 높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바, 90일로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사업 대상공원이 도시계획 실효시기가 '21. 8월로 다가옴에 따라 '20.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타당성검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심의, 실시 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 도시계획실효 이전에 이행이 필요하여 제안서 공모기간 연장은 불가
3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 상의 제안서 접수기간(60일)이 타 지자체의 민간공원특례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촉박합니다. 수년간 장기미집행 시설로 유지되어 온 도시계획시설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하여 제안서 접수기간의 연장(90 ~ 100일)이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번” 답변내용 참조
3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작성 지침 제2조제5항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관련 자료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별권<서식 17> 제출하라 되어 있는데 <서식 17> 요약 재무상태표만 별권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제8조(제출서류) 표 내 사업능력 평가서류에 포함하여 사업능력 평가서류를 별권 제출 하는 것이 맞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작성지침에 따라 사업능력 평가서류에 포함하여 별권으로 제출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38	25	○ 제1조제2항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며, 공고일 이전의 것을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고일 이후 발행하기 어려운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첨부 가능
39	25	○ 제2조제1항 제안서에 명기된 도면에는 축척과 방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3장 제13조 제2항(14페이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도면(공원조성계획도, 공원시설배치도, ~기반시설 배치도 등)외 보고서상 삽도에 반드시 축척과 방위를 기입해야 하는지? 미표시기 별도의 감점이 있는지?	○ 제안서에 명시된 도면과 보고서상 삽도에도 일관되게 축척과 방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시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비계량 평가시 불이익 처분 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 간주될 수 있음.
40	25	○ 제2조제2항 외국어는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명기하라고 했는데 외래어(컨셉, 콘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를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지?	○ 사회통념상 명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41	26	○ 제안서 작성지침 제2조제11항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수치지형도 등) e-mail 제공 관련해서 별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전산자료 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는 제안공고일 이후 수시로 제출받고 있으며 전산자료를 요구한 업체에 대해 ‘11.27.부터 자료제공 되고 있음. ○ 전산자료 요청서 및 보안각서 제출서식과 2025년 도시기본 계획 및 2025년 제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42	26	○ 제안서 작성지침 제3조 제2항 관련 쪽수 산정시 간지도 쪽수로 산정 되는지 질의합니다.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간지, 목차 등 쪽수에 포함되며, 100쪽 이내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단, 양면 인쇄시 간지와 목차는 1쪽으로 산정
43	26	○ 제2조(일반사항)제11항과 관련 수치지형도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의 수령을 위한 보안각서의 서식이 별도 없으며, 작성 후 서명 및 수령시기는?	○ “41번” 답변내용 참조
44	26	○ [붙임 1] 제2조(일반사항)제11항과 관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수치지형도, KGIS, 지적도 등)의 수령을 위한 서명 및 수령시기는? ○ 보안각서에 대한 별도 서식이 없는데 수령시 별도 서식없이 수령이 가능한지?	○ “41번” 답변내용 참조
45	26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의 수령을 위한 서명 및 수령시기에 대한 질의? ○ 보안각서에 대한 별도 서식이 없는데 수령시 별도 서식없이 수령이 가능한지?	○ “41번” 답변내용 참조
46	26	○ 제2조제10항제2호 기획재정부가 2017년 8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할인율은 연5.5%에서 연4.5%로 변경됨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5.5%를 적용하는지	○ 사회적 할인율 연 5.5%에서 4.5%로 변경 적용하여 제안서 작성 - 사회적 할인율 변경 공고 계획임.(제안서 작성지침 제2조제10항제2호)
47	26	○ 제3조제3항 표 및 삽도(그림, 도표 등)도 규정된 글씨크기를 준수해야 하는지?	○ 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글자모양 및 크기 규정을 준수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48	26	○ 제2조(일반사항)제11항과 관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인근 상수, 하수, 우수계획 관련자료)	○ “41번” 답변내용 참조
49	26	○ 제2조제10항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 지표중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 4.5%이므로 이 기준을 반영해도 되는지? ○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실제 사업 시행시 투입되는 비용과 상호 모순됨. 총사업비 산정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 차입이자율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자유롭게 제시해도 되는지?	○ “46번” 답변내용 참조 ○ 물가상승률 및 차입이자율은 제안지침에 따라 작성
50	27~28	○ 제3조 관련 이미지(삽도)의 경우 제3항 6, 8호 규정에 의거 글자모양(바탕체) 및 글자크기(12Point)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 도판제작 기준의 사이즈가 A1과 (420mm * 594mm)로 상이한 바, 정확한 도판 제작 규격은?(예시: A1(594mm * 841mm))	○ “47번” 답변내용 참조 ○ 도판제작 기준은 A1(594mm * 841mm) 사이즈로 출력후 반으로 접어(A2사이즈) 책자형태로 제출 - 도판제작 기준 변경 공고 계획임.(지침 제3조 제4항)
51	27	○ 제3조 제3항 제2호 재질 다) 간지(연녹색) 뒷장 여백은 쪽수로 산정되는 것인지?	○ “42번” 답변내용 참조
52	27	○ 제안서 간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지?, 만약 반드시 간지가 작성되어야 한다면 앞면과 뒷면 모두 페이지에 포함되는지?	○ “42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53	28	○ 제3조(제안서 규격 등) 제4항 도판 제작 기준 관련하여 A1 사이즈와 가로안에 기재된 내용(420mm×594mm : A2사이즈)과 다르며 정확한 제출 사이즈 규격에 대해 질의, 그리고 접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접지하여 제출한다는 방법인지? (반접이 또는 병풍접이)	○ “50번” 답변내용 참조
54	28	○ 제4조제2항 부속서류내 인감 날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에 따른 평가 불가요인이라 제안 무효처리 되는데 원본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본의 경우 업체 인감날인, 대표자명 등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미표기 하여도 되는지 유무?	○ 부속서류 원본 1부에 한함. 사본은 미표시 제출
55	28	○ 도판은 두께 1~2mm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추후 변형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5mm 백색 폼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 ○ 도판 표지는 서식에 첨부되지 않아서 임의로 작성해야 되는지? 또한, 표지의 필요여부 ○ 제5조(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 제1항 국토교통부 지침3-3-2 내용은 어떤 지침인가요?	○ 도판은 추후 변형 등을 고려 5mm 백색 폼보드로 변경 제출 가능 ○ 도판 표지는 임의로 작성 가능 ○ 국토교통부 지침은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말함.
56	29	○ [붙임] 제안서 작성지침 제5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개략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략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서평가를 위해 별도로 작성 제출
57	29	○ 제5조제2항 타인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서(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제안서 제출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변경되어도 무방한지?	○ 사업시행계획 비계량평가(재원조달계획) 항목에 포함됨. ○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새로운 출자자로 변경할 때에는 지침 제21조를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5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3항과 관련 공모단계에서 사업계획서는 기본, 시설실 시설계 전단계로 상세한 도면에 의한 수량산출 및 일위대가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물량 또는 대표 공종의 물량으로 산출하고 단가는 정부표준품셈의 견적이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시해도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략공사비로 산정하고 정부표준품셈 단가, 정부고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이 등을 적용함. ○ 제안서 평가(심사)표 계획의 신뢰성 등 평가부분이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
5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작성지침 제6조제1항제4호 나목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 「공항 시설법」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 등 높이 규제가 있는데 비공원 시설부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심의,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
60	3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조성된 공원시설,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 면적 제외”라고 되어있는 반면, “공원조성 계획시 국·공유지 포함한 오등봉·중부공원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는 공원시설 면적에 국·공유지면적(기조성 시설 포함)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 답변내용 참조
61	33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원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 포함시 그 매입면적은 오등봉공원 사업대상 면적 510,769㎡와는 무관하게 민간공원추진자가 매입함을 말하는지?(사업대상 면적 = 510,769㎡ + 국, 공유지 매입면적이 되는지?) ○ 도남동 1220번지가 국유지에서 공유지로 변경된건 아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 답변내용 참조 ○ 도남동 1220번지 : 공유지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62	3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원시설 부지내 국,공유지 포함시 민간공원 추진자가 매입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원시설 계획시 불가피하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한 사항인지? -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 토지의 면적을 대상지 면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 “2번” 답변내용 참조
63	34	○ 비공원시설 부지내 국,공유지 포함시 민간공원추진자가 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원시설 비율은 국,공유지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대상면적(사유지) 기준으로 30% 미만인지 질의합니다.	○ 비공원시설 부지의 면적은 국, 공유지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대상면적(사유지) 기준의 30%미만임.
64	34	○ 비공원시설 설치시 최고층수(최고높이) 상한선이 있는지?	○ “59번” 답변내용 참조
65	34	○ 라. 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에서 1) 공원시설중 공원조성계획시 국·공유지 포함한 오등봉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 2) 비공원시설 중 비공원시설 부지내 국공유지 포함시 민간공원추진자가 매입함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공원시설의 국, 공유지는 보상을 안해도 되는지?	○ 국·공유지중 하천구역 및 기 조성(계획)된 공원시설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는 매입 필요
66	36	○ 공동제안인 경우 대표제안자만 평가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제안서 평가(심사)표 중 계량평가 항목에 대하여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제안자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제안서 평가표상 평가항목(계량평가)은 대표제안자만 평가함.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67	37	<p>○ 유사한 사업실적 등에 따르면 공원시설(주택건설 등)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 실적의 의미는 시행실적과 시공실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㉞ 비공원시설 사업 실적 중 주택건설(아파트) 실적도 포함되는지?</p>	<p>○ 실적은 제안 공고일 기준('19.11.13.) 최근 5년내 시공하여 준공한 사업실적으로 공공기관 및 인허가 기관에서 발급한 준공금액이 기재된 실적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인정됨.</p>
68	37	<p>○ 주1) 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컨소시엄(SPC) 구성할 경우에 컨소시엄(SPC)에 대한 세부배점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대표 제안사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만 평가하는지 질의합니다.</p>	<p>○ “66번” 답변내용 참조</p>
69	37	<p>○ 주1) 재무구조, 경영상태에서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적용을 개별재무제표인지 연결재무제표인지 질의합니다.(대한건설협회 고시는 개별재무제표 적용임)</p>	<p>○ 개별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일 경우 연결재무제표로 제출하면 필요시 별도의 개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p>
70	37	<p>○ 주1) 제안자가 소유한 면적을 계량평가 하는데 이와 관련된 66페이지 <서식 22>의 제안자 소유토지조서 주)2에 따르면 대표사의 소유토지를 기재하고 소유권 확인을 위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컨소시엄(SPC)의 대표사 소유 토지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SPC)의 출자회사의 소유 토지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또한 소유 토지가 없을 경우에도 각각 0.6점이 인정되는지 질의합니다</p>	<p>○ 토지소유면적 및 소유금액 평가는 대표제안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 ○ 소유토지가 없는 경우에도 0.6점이 인정됨.</p>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71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3] 주3) 1) 사업실적과 관련 사업실적 및 참여 전문인력 계량평가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실적 등은 제안서 접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한 사업실적이며, 공원 및 비공원 시설(주택건설 등)에 대한 사업실적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사업실적이 시공실적만 적용하는 것인지, 시공 및 시행실적도 적용되는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번” 답변내용 참조
72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경영상태에서 최근년도라 하면 2018년 회계기준인지? ○ 사업시행의 안정성 관련 소유토지의 평가는 대표사 소유 기준인지, 컨소시엄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실적’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사업시행실적도 인정 가능한지, 시공실적만 인정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경영상태는 2018년 회계연도에 공시된 기준 적용 ○ 사업시행의 안정성 관련 토지소유면적 및 토지소유 금액은 대표 제안자 소유 기준임. ○ “67번” 답변내용 참조
73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3] 주2) 사업시행의 안전성과 관련 소유토지면적은 대표사의 토지비율만 적용되는지? ○ 소유면적비율이 0%일 때 3%미만(0.6점)에 해당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번” 답변내용 참조
74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3] 주3) 사업수행능력과 관련 유사한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5백억미만(3.0점)에 해당되는지? ○ 참여전문인력 보유현황, 참여전문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해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5백억원 미만에 해당 점수 부여 ○ 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해 제안 공고일 기준(‘19.11.13.)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75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3] 주3) 1) 사업실적과 관련 사업실적 및 참여 전문인력 계량평가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실적 등은 제안서 접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한 사업 실적이며, 공원 및 비공원 시설(주택건설 등)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실적이 시공실적만 적용하는 것인지, 시공 및 시행실적도 적용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번” 답변내용 참조
76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 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 자산, 유동부채의 최근년도 기준은 2018년도 1개년이 맞는지? ○ 분석에 사용될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일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개별재무제표를 의미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번”, “72번” 답변내용 참조
77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3) 사업실적 평가시, 제안자가 “관리형 토지신탁”형태로 시행하여 완료(준공)한 공원 및 비공원시설 실적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번” 답변내용 참조
78	37 64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격은 제안서평가(심사)표에서 산정하는 근거와 토지매입 조서, 제안자 소유 토지조서에서 산정근거가 1배와 5배로 상이 한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격은 편입 토지면적에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하고 지장물은 토지가격의 20% 적용 - 제안서평가(심사)표 및 평가기준 주2) 사업시행의 안정성 변경 공고계획임.(최근년도 고시된 공시지가 적용 → 최근년도 고시된 공시지가 5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79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3) 사업수행능력의 사업실적과 관련 공원 및 비공원시설 등에 대한 사업실적은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도 해당되는지? - 시행실적과 시공실적 모두 인정되는지? - 최근 5년간 완료한 사업실적이란 준공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 제안서 접수공고일이란 제23조제1항제1호의 접수기간 2020년 1월 13일인지, 공모공고일 2019. 11. 13일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사업실적 등이란 공원조성사업 실적, 제안자가 제안한 비공원시설(주택건설 등) 사업실적,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적임 ○ “67번” 답변내용 참조 ○ ‘제안서 접수공고일’이라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 공고일(‘19.11.13.)을 말함.
80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2) “소유토지는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압류·지상권·가등기·가처분 등의 설정이 없는 토지로서 제안자가 매매등을 함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는 토지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주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소유토지 및 소유토지 금액으로 인정되는지? ○ 신탁에 의한 토지 소유도 소유토지 및 소유토지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권 없이 동의나 위임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더라도 소유토지 면적 및 소유토지 금액 인정 안 됨. ○ 신탁에 의한 소유도 소유토지 면적 및 소유토지 금액 인정 안 됨.
81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경력부분의 평가기준은? - 컨소시엄 대표사의 재직중인 인력 - 컨소시엄 구성사 지분율에 따른 평가 ○ 참여 전문인력 재직 기준일은? - 공고일, 사업제안서 제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경력부분의 평가는 대표제안자만 평가 ○ 참여 전문인력 재직 기준일은 제안 공고일 기준(‘19.11.13.)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82	38	○ 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에서 국가 기술자격취득자중 초급기술자 이상의 등급을 갖춘 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학경력자도 가능한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학,경력자의 경력도 인정하고 있음)	○ 제안서 평가(심사)표 및 평가기준 주3). 2)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참조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기준」에 따른 학·경력자 경력 인정 안 됨.
83	38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여부 평가가 대표 제안사에 한해 징계횟수를 평가하는지, 아니면 컨소시엄(SPC) 구성사 전부를 평가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여부는 대표제안자만 평가
84	38	○ 주4)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여부와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부문 평가 시 징계란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지? 예)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 사면받은 사항도 징계 횟수에 포함되는지?	○ 징계란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의미 -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1회를 받았으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0회로 인정 - 사면된 징계도 횟수에 반영
85	38	○ 지침 ‘평가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여부’ 관련 징계횟수 평가시 입찰참가제한이 아닌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도 징계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1회를 받았으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0회로 인정되는지?	○ “84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86	38	○ 지침 '평가기준 입찰 참가자역 제한 등 징계여부'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여부에서 관계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만 확인하면 되는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 확인 후 제출
87	38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여부 평가 관련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모든 징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공정거래법 관련 징계여부는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의 징계를 포함하는지? - 징계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정명령 등을 포함하는지? - 구체적인 징계현황 증빙서류는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 “84번”, “86번” 답변내용 참조
88	38	○ [붙임3] 주4)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여부와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부문 평가시 징계란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지?(예: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 사면받은 사항도 징계 횟수에 포함되는지?	○ “84번” 답변내용 참조
89	38	○ “참여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참여 전문인력 전문성 및 경력”의 기준일은 공모공고일과 제안서 접수일 중 어느 것으로 기준하는 것인지?	○ “81번” 답변내용 참조
90	38, 70	○ 주4)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현황의 기준 법은 <서식 26>에서 규정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3개법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 “86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91	38	○ 참여 전문인력의 보유 및 경력의 기준일은 공모공고일과 제안서 접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81번” 답변내용 참조
92	39	○ 공원조성면적의 기준이 공원부분의 기부채납 면적과 전체 기부채납면적(공원 면적 및 공공기여시설 부지면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 공원조성면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부채납 면적은 순수 공원 조성계획면적 적용.(하천과 기 조성(계획)된 공원시설 제외)
93	39	○ 공원조성 면적 관련 서식의 총면적은 국, 공유지를 포함한 [붙임2]에 따른 결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붙임2]에 따른 사업대상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2번” 답변내용 참조
94	39	○ 주6) 공원조성계획과 관련 토지보상비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공원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 토지보상비는 지장물 보상비 포함.
95	39 44	○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원시설 설치만을 제안 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 공원조성비 포함 가능 여부(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 설치비용은 포함 가능한지?) - 총 면적(제안면적)에의 포함 가능 여부 - 부지면적(공원시설부지로 제안하는 면적)에 포함 가능 여부	○ 공원조성비는 반영됨. ○ 총 면적과 부지면적에는 제외됨.
96	39	○ [붙임 3] 주6)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관련 토지보상비는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총비용은 공원조성비와 비공원시설 조성비를 합산 금액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공원조성비와 비공원시설 조성비에는 설계비, 측량비, 감리비 등을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인지?	○ “94번” 답변자료 참조 ○ 총 비용은 특례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97	39	<p>○ 주6) 1) 공원조성비용 관련 공원조성비용이 공원시설비 및 토지 보상비로 명시되어 있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비는 공사비만 의미하는 것인지? - 공원공사와 관련된 간접공사비 및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p>○ 공원조성비용은 공원조성 공사비와 토지보상비(지장물 포함)만 의미하며, 조사, 설계, 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비공원시설에 반영</p>
98	39	<p>○ 주6) 2) 공원조성 면적과 관련 총면적은 공원부지와 비공원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라 명시되어 있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면적은 편입토지조서상의 면적중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면적(오등봉: 764,863㎡/중부:214,20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오등봉: 510,769㎡/중부: 203,954㎡)으로 적용하는지? - 공원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공원면적에 산정하는지?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 비공원시설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비공원시설면적에 산정하는지?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p>○ 총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면적(오등봉: 510,769㎡/중부: 203,954㎡)임.</p> <p>○ “2번”, “95번” 답변내용 참조</p>
99	39	<p>○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와 관련하여 토지가격은 최근년도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명기되어 있으며, [붙임 4] 관련 서식중 <서식 20>, <서식 22> 토지매입조서와 제안자 소유 토지조서상 토지가격은 최근년도 고시된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제안서 제출시 실제 거래가격 또는 이후 보상감정평가시 산정될 보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안서 기준대로 작성하면 되는지?</p>	<p>○ 제안서 기준대로 작성</p>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00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3] 제안서평가(심사)표 및 평가기준의 주6)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 면적(10점) 중 공원조성 면적은 기부채납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은 공원부지와 비공원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됨 ○ 공원부지와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공유지 전체가 포함된 면적인지? - 국, 공유지를 제외된 면적인지? - 보상된 국, 공유지만 포함된 면적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 답변내용 참조
101	39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6) 공원조성계획 및 <서식 22>제안자소유 토지조서의 토지 가격과 관련 주6) 공원조성계획에서 규정하는 토지가격은 공시 지가를 적용하며, <서식 22>에서 규정하는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하게 되어있어 서로 상충되는데 어느 것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번” 답변내용 참조
102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현금으로 납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특정시설을 설계/시공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방식인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설계/시공하여 기부채납 해야 한다면 제안서 제출시 공원조성계획에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 공공기여시설은 공원시설부지 내 또는 공원구역 밖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현금납부 및 시설설치 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모두 인정됨. - 특례사업 대상 공원구역 내에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에 포함 - 공공기여시설은 공원구역내·외에 자유롭게 설치 가능 - 공원구역내·외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에 투입된 비용(토지매입비, 조사, 설계, 시공, 감리비 및 부대비용)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비용에 반영할 수 없고 수익률 산정시 반영가능(제안서작성지침 <서식 30>)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에 토지매입비(공원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공공기여시설 공사비, 공공기여시설 설계/감리비 등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비용 전부를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103	42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 관련 공공시설이 공원내 입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원 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별도로 확보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 “102번” 답변내용 참조
104	42	○ 임대주택 관련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중 사업자가 자유로 선택하여 제안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안시 공공기여시설로 기부채납시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는 사업제안자 자율로 제안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여야 함. ○ 공공기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함.
105	42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여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공기여시설로 기여해도 되는지?(공원 및 비공원시설 설치비용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102번” 답변내용 참조
106	42	○ [붙임3] 주9) 2)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와 관련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인지?	○ “102번” 답변내용 참조
107	42	○ 주9) 공공기여도 등 관련 지역업체 참여 가점의 경우, 출자비율 49%이상 만점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업종 구분은 없는 것인지?	○ 「건설 산업기분법」 상 지역 건설업종을 말하며 참여비율은 컨소시엄(spj)의 지분 출자율 기준임.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08	42	○ 지침 36페이지 하단에 공동제안인 경우 대표제안자만 평가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침 '지역업체 참여비율' 관련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대표제안자여야만 하는지?	○ 대표제안자가 아니더라도 지역 컨소시엄 업체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음.
109	42	○ 주)공공기여도 등 관련 임대주택비율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는? (임대주택 방식에 따라 사업성이 다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인지? - 민간공원사업자가 건설만하고 지자체에 공급하여 모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방식인지?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시행 방식으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제주도에 공급	○ “104번” 답변내용 참조
110	42	○ 주9) 공공기여도 관련 2)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비용은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설치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 주6) 공원조성 비용 평가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서식 30> 사업현황 작성시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수익률 산정시 해당비용의 포함 여부는?	○ “102번” 답변내용 참조
111	42	○ 3) 지역업체 참여비율관련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컨소시엄 내 지역업체 수에 제한이 있는지? - 만일 컨소시엄 내 지역업체의 수가 복수라 하면 평가기준의 출자지분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 컨소시엄내 지역업체 수에는 지침 제7조(제안자 자격조건 및 응모신청 방법)에 제시된 컨소시엄 구성 범위내에 가능하고, 컨소시엄내 지역업체의 수가 복수라 하면 출자지분을 합산하여 계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12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9) 공공기여도 등 계량평가(8점) 관련 공공기여도 임대주택 비율 평가에서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 공공기여시설 설치시 사업대상면적 범위내로 입지가 국한된 것인지? - 향후 우선협상자 선정시 공공기여시설 입지 및 공사비 등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번” 답변내용 참조 . ○ “104번” 답변내용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공공기여시설 입지 및 용도 등은 지역주민 공청회결과 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투자비는 변경 할 수 없음.
113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3] 주9) 2) 공공기여시설 투자비와 관련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는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번” 답변내용 참조 .
114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3] 주9) 3)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가점의 경우, 출자비율 49%이상 만점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업종 구분은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번” 답변내용 참조
115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9) 2) 공공기여시설 투자비(2점)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국토법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과 같이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여설치 부지에 대하여 공원부지내, 외에 모두 투자가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번” 답변내용 참조
116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비율 10% 가산점(3점)에 있어 임대주택의 방식에 발주처의 제안이 있는지?(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어떤 방식의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무관한지?) ○ 공공기여시설 투자비(2점) 관련 투자비로 공원 내를 통과하는 한천 전체에 대한 하천정비 비용도 공공기여시설 투자비로 볼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17	42	○ 지역업체 참여비율(3점)관련 “평가기준은 본 사업 총 출자비율을 말한다“에서 총 출자비율은 9페이지 제7조(제안자 자격조건 및 응모방법) 제1항 또는 제4항에서 말하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지분율을 말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시공분야에서 시공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람.	○ “107번” 답변내용 참조
118	44	○ 지침 ‘감정기준 및 평가제외 사항’ 하단에 제안서 내 수록도면 중 기반시설 배치계획도에 상하수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되어야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현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 기반시설 배치계획도상에는 상·하수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 자료는 발주청에 전산자료 요청서 및 보안각서 제출 서식 작성 제출시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자료실에서 서식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119	46 47 60	○ <서식 2, 3, 16> 컨소시엄의 경우 서식의 기재된 내용 중 회사명에 컨소시엄 대표사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안서 작성자에 실무 담당자(컨소시엄 대표사 임직원)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표지서식의 회사명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대표사명을 기재
120	51	○ 매출액의 최근 3년 기준은 2018년, 2017년, 2016년이 맞는지?	○ 2018년, 2017년, 2016년 매출액임.
121	61	○ 평가부분 중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과 관련하여 <서식 17> 회사경영상태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대상에 포함인지 -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한 평가 - 컨소시엄 구성원 지분율에 따른 평가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평가는 대표제안자만 평가하며, ○ 컨소시엄 구성원의 내용은 비계량평가(제안심사위원회)시 활용될 수 있음.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22	61	○ <서식 17> 사업능력 평가서류의 증빙서류 최근 3년 감사보고서(결산서)는 첨부하여 제출하는지 유무?	○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17> 회계법인이 작성한 요약재무 상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제출은 생략가능하고 제안서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123	62	○ 주2) 손익계산서의 최근 3년 기준은 2018년, 2017년, 2016년이 맞는지?	○ 2018년, 2017년, 2016년도 손익계산서임.
124	64	○ 토지매입관련 토지매입은 사업대상구역 전체 토지에 대한 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사업대상구역 전체 토지란 33페이지[붙임2]의 사업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서식 20> 토지매입조서는 「제안서작성 지침」 33페이지, 34페이지 사업대상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125	64	○ <서식 20> 토지가격은 최근년도 고시된 공시지가 5배 적용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 “78번” 답변내용 참조
126	64	○ <서식 20> 토지매입조서와 관련하여 - 토지매입조서의 토지가격은 주)1.에 따라 공시지가의 5배로 작성하는지? - 토지 매입조서의 면적은 주)2.~3.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이 아닌 공원시설 전체부지로 작성하는지? - 제공된 토지편입조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필지 확인 결과 분할되거나 합필된 필지가 존재함. 이 경우 시에서 제공한 토지조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제안자가 작성한 토지조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78번” 답변내용 참조 ○ “2번” 답변자료 참조 ○ “1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27	64	○ 지침 <서식20> ‘토지매입조서’ 주3)에 따라 소유권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간단 표기하는데, ‘토지매입조서’ 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도 꼭 작성해야 하는지?	○ 토지매입조서 관련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도 작성
128	64	○ <서식20> 토지 매입조서와 관련 토지 매입조서의 토지가격은 주)1.에 따라 공시지가의 5배로 작성하는지? ○ 토지매입조서의 면적은 주)2.~3.에 따라 사업부지면적이 아닌 공원시설 전체부지로 작성하는지?	○ “78번” 답변내용 참조 ○ “2번” 답변내용 참조
129	65	○ 지장물 매입조서관련 물건매입비는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78번” 답변내용 참조
130	65	○ <서식 21> 지장물 매입조서와 관련 물건 매입비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를 시행한 뒤 지장물 현황도까지 첨부하는 것이 맞는지?	○ “78번” 답변내용 참조 ○ 지장물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지장물(건축, 시설물) 현황도는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으로 작성
131	65	○ 지침 <서식 21> ‘지장물 매입조서’ 주)1)에 물건 매입비는 감정평가액과 동일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각각의 제안자가 지장물 조사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장물 매입조서를 작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동일한 사업지에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비용 중복 지출) - ‘지장물 매입조서’ 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를 작성해야 하는지?	○ “78번” 답변내용 참조 ○ 지장물 매입조서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는 토지매입조서와 동일하게 작성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32	65	○ <서식21> 지장물 매입조서와 관련 지장물 매입조서 서식 및 주)1.~3.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 “131번” 답변내용 참조
133	65	○ <서식 21> 지장물 매입조서의 현황도 작성시 실측이 어려움으로 위성사진 또는 수치지형도를 대체하여 첨부이 가능한지 유무	○ “130번” 답변내용 참조
134	65	○ <서식 21> 지장물 매입조서의 물건매입비를 각 업체별로 감정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참여업체마다 상이한 감정 평가액으로 객관성이 결여됨 ○ 제안자가 법적인 권한없이 사유지를 출입하여 지장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워 타시도 사례와 같이 다른 방법 제안 가능한지?	○ “131번” 답변내용 참조
135	67	○ <서식 23> 제안자의 사업실적 주2) 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을 첨부해도 되는 것인지?	○ “67번” 답변내용 참조
136	68	○ <서식24> 제안자 사업시행 인력 보유현황 표 내용에 주민등록 번호는 모두 기재하는 것인지, 생년월일 이후 1혹은 2번까지 기입하고 *처리해도 되는 건지?(예 000000-1*****)	○ 주민번호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 제출 예) 000000-1*****
137	70	○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대표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식(26) 징계현황의 경우 작성 시 컨소시엄 구성원의 징계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성원의 징계사유가 평가 대상에 포함인지? -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한 평가 - 컨소시엄 구성사 지분율에 따른 평가	○ “83번” 답변내용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38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28> 본사업의 총비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격과 추정가격이 같은 의미인지 - 제안서 작성시 반영하는 토지보상비는 <서식 22> 토지매입 조서에서 규정하는 공시지가의 5배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추정하는 토지예상(탁상감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 만약 공시지가의 5배를 반영한 토지매입가를 적용시 향후 실제 보상액이 더 클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내에서 타항목과 조정이 가능한지 - 공원시설 사업의 항목에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 시설항목만 있는데 시설비의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가로 작성해도 되는지? -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사업비 중 공통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분개하여도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번”, “97번” 답변내용 참조 ○ 본 사업의 총비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격(지장물 포함)과 추정가격은 같음. - 실제 보상액이 예상가와 상이할 경우 타 항목과 조정불가
139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서식 28> 본 사업의 총비용 관련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공원시설 설계, 감리,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 공원 시설 조성을 위한 필수 비용의 경우 공원시설 사업비에 포함 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번” 답변내용 참조
14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28> 본 사업의 총비용에서 공원시설의 설계, 감리비는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번” 답변내용 참조
141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계획 중 하천은 녹지면적으로 분류하여도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평가 기준 주6), 2) 공원조성 면적 참조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42	74	○ <서식 30> 공원사업현황 관련하여 - 표내용에 따른 공원면적은 결정면적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 사업비 내 공사비는 조사,설계비가 포함된 사항을 기재하는지 여부	○ “2번”, “138번”답변내용 참조
143	74	○ <서식 30> 공원 사업현황에서 수익률 제시의 기준은? (세전수익/세후수익)	○ 세후 수익기준 적용으로 작성
144	75	○ <서식 31> 재무능력 평가표 중 (1)신용등급, (3)해당 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에정금액 부분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 부분 칸을 만들어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 기업신용평가등급 부분 추가하여 작성 - <서식 31> 재무능력 평가표 서식변경에 따른 변경공고 계획임. (기업신용평가등급 추가)
145	77	○ 지침 <서식 28>과 <서식 30> 항목이 비슷하고, <서식 33>과 <서식 34> 항목이 비슷한데 <서식 33>과 <서식 34> 항목을 <서식 28>에 맞춰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 사업능력 평가서류 서식은 임의로 변경 불가, 관련 서식에 맞게 작성
146	기타	○ 제안서 제출시 필요한 서식 일체를 HWP 파일로 요청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 고시,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147	기타	○ 현장조사를 위한 사유지 출입 및 드론촬영 가능 여부	○ 현장조사는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유지 임의 출입은 불가
148	기타	○ 오등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제주시 고시 제2019-282호) 내용 반영 여부(문학관, 박물관 등)	○ 문학관, 박물관은 오등봉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됨.

연번	지침 (페이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149	30	○ 비공원시설에 대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할 경우 높이 규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15층 이하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등에 의해 15층보다 더 낮은 층수규제'가 있는지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 이상도 가능한지?	○ "59번" 답변내용 참조
150	19	○ 제안당시 컨소시엄의 지분이 수용통보 이 후 제안당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SPC 구성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SPC 구성 후 발주청의 승인 시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이 가능한지?	○ 지침 제21조 참조
151	기타	○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의 토지보상 예상가로 책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예정된 공원시설비는 얼마인지?	○ 2019년도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해소 종합대책에서 추정된 보상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타 도시공원 보상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토지보상비, 지장물 매입비, 잔여지 매입비, 향후 지가상승율 등이 감안되어 있음. - 오등봉공원: 토지보상비 1,426억 원, 공원조성비 161억원 - 중부공원: 토지보상비 603억 원, 공원조성비 79억원
152	기타	○ 요청자료 -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 -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조성계획도면 및 조성계획조서 - 사라봉공원 조성계획도면 및 조성계획조서 - 오등봉, 중부공원 부근 지반조사서 - 오등봉, 중부공원 인근 상수, 하수, 우수계획도면 시설자료 - 수치지형도, 지적도	○ 전산자료 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 제출한 제안자에 대하여 자료제공 예정